

보건의료정책연구소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의료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소의 역할) 연구소는 질병의 원인 규명과 예방, 건강증진, 보건의료자원과 서비스 평가 등의 연구를 통해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

제3조(연구소의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질병의 원인 규명과 예방에 관한 연구
2. 지역사회에 기반한 건강조사 및 보건사업
3. 보건의료 관련 빅데이터 구축과 모니터링
4. 보건의료자원과 서비스에 관한 평가
5. 보건의료정책 개발 및 관리
6. 기타 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기초 및 실용 연구

제 2 장 조 직

제4조(구성)

- ① 연구소는 산하에 질병예방연구팀, 환경보건연구팀, 의료관리연구팀 등을 둔다.
- ② 연구소는 주요 사항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③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연구지원부장, 연구팀장 등을 두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참여교수, 책임연구원,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연구소장 등)

- 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사업 일체를

5-1-45~2 제5편 부설연구기관

관장한다.

- ② 연구지원부장은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 사무전반을 관장한다.
- ③ 연구팀장은 해당 연구팀의 연구 일체를 관장한다.
- ④ 연구소장과 연구지원부장, 연구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참여 교수, 책임연구원 등)

- ① 연구소에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와 외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참여 교수와 책임연구원,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 ② 참여 교수는 연구소장이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하며, 책임연구원, 연구원 등은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 ③ 참여 교수, 책임연구원,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등

제7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연구지원부장, 질병예방연구팀장, 환경보건연구팀장, 의료관리연구팀장 등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연구소 운영과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제 4 장 연구비 및 간접경비 등

제9조(연구비 및 간접경비)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부터 공모에 의해 수혜한 연구비와 이에 준하는 기업, 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국내·외 연구비를 수혜한 경우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따라 연구 간접 경비를 납부한다.

제10조(기부금 및 위탁 연구기금) 연구소 소속의 교원이 외부로부터 기부금이나 위탁연구 기금을 수혜한 경우 기금은 산학협력단의 별도 관리 하에 해당 교원의 연구에 국한하여 사용한다.

제 5 장 재 정

제11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기금, 본교와 병원 및 재단의 지원금, 외부기관의 찬조금과 기부금, 연구사업 수익, 기타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회계 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및 결산) 연구소장은 매 회계 연도 종료 3개월 전에 다음해의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운영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 연구소의 수입·지출에 대한 감사는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규정개정 및 준용

제15조(규정개정 등) 연구소의 규정개정, 해산 및 기타 중요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운영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천대학교 부설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